



검 토 보 고 서

○ 남양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운 영 위 원 회
전문위원 김 학 철

남양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1. 발의경과

본 조례안은 2022년 4월 13일 김지훈 의원 등 7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2022년 4월 15일 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임.

2. 제안이유

「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」이 개정·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금품수수 금지 제외대상 품목 중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의 선물 가액 범위를 설날과 추석 기간에 한정하여 두 배(10만원→20만원)로 상향 조정(안 제11조제3항제1호 별표1)

4. 검토의견

본 조례안은 「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」 개정에 따라 이와 관련된 조례의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됨.